

# 근대일본의 국제공법 수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최 장근\*

nihonbu@daegu.ac.kr

## <요旨>

日本はロシアのクリル列島、中國の釣魚諸島、韓國の獨島に對して領有權を主張している。そもそもこれらの地域がなぜ日本との間に領有權紛争が起ったのだろうかという疑問を抱くことになった。それで見たら、これらの領有權紛争地域の共通点として大日本帝國時代に日本政府が日本領土に編入して領土を擴張した地域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このような問題意識をもって近代日本が領土を擴張するために受容した國際公法の適用に誤り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疑問をもって研究を進めた。その結果、近代のヨーロッパでは國際公法を市場經濟の擴大と領土紛争の解決手段として利用されていた。しかし、國際公法が強大國が弱小國に力で脅迫して條約を締結させて利益を取らせていることに着目して、日本は、これを弱小國の領土を奪して領土を擴張する手段として國際公法を利用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實際、近代日本は韓國、中國、琉球、台湾に次々と條約を締結させ領土主權を奪い日本の領土を擴大していたのである。それが今日韓國、中國、ロシアが日本との間に領有權紛争を起している本質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

主題語：國際公法, 無主地先占, 條約, 協定, 朝日修好條規, 清日修好條規

## 1. 들어가면서

日本은 독도를 비롯해서 조어도, 쿠릴열도(최남단4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은 1868년 이후 일본이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면서 영토로 편입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쿠릴열도 4도는 러일 양국이 1855년 러일 화친조약으로 아이누모시리지역을 분할하면서 일본영토에 편입한 지역이다. 釣魚島는 일본이 청일전쟁 중에 무주지 선점으로 편입했다고 하는 지역이고,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무주지 선점으로 편입했다고 하는 지역이다. 그 후 쿠릴열도4도는 러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할린과 더불어 유동적인 국경선으로 변하였고, 독도는 한국합병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조어도는 제2차 세계대전과 1972년 일본의 오키나와 영토화를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거치면서 영토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되었다.

이들 영토문제의 지역은 각 시기마다 법적인 지위가 다른데, 특히 본질적인 문제는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가 타당했느냐는 것이다. 일본은 조어도와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한다.<sup>1)</sup>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에 동의하지 않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행위는 주권침해행위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일본은 근대국가가 되면서 유럽의 국제공법을 수용하여 대외영토를 확장해갔다. 그래서 본연구의 목적은 당시 일본이 적용했던 국제공법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근대일본의 영토조치의 본질을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근대유럽의 국제공법의 특징에 관해서 고찰해본다. 둘째는 일본이 근대유럽의 국제공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을 수용했는지를 고찰한다. 셋째는 일본이 근대공법을 수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는 일본영토정책을 분석한 논문인데, 국제공법의 수용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 근대 일본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근대유럽의 국제공법을 수용하여 어떻게 변용해갔는지를 규명한 것이 본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 2. 근대 유럽의 국제공법의 성립

### (1) 영토분쟁의 역사

유사 이래 유럽은 민족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오늘날 많은 국가가 다민족국가로 되었다. 4-6세기에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는데, 원래 폴란드지역 주변에 살던 고드인들이 멀리 이베리아반도까지 이동하여 오늘날 스페인의 기초가 되었다. 독일 북부에 살던 앵글로 색션족은 영국으로 이동했다. 아시아, 우랄지방에서 유럽으로 이동하여 헝가리에 사람이 정주하게 되었다. 슬라브인들도 러시아에서 발칸반도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좁은 유럽지역에 많은 민족이 이동하여 다민족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 유럽에서는 많은 전쟁으로 국경선의 변동도 심하게 있었다.

19세기 이전부터 독일과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누 지방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1) 러시아는 북방4도가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러시아영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으로 전쟁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이 패전하여 독일로부터 체코가 알자스 로렌 누 지방을 차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즈데텐 지방의 소유권분쟁이 원인이 되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패전으로 루마니아가 트랜실바니아를 차지했고, 세루비아는 보이보지나자치주를 차지했다. 독일이 패하여 폴란드가 독일의 동북지방을 할양했다. 전승국 구소련은 폴란드 동부지역을 할양했다. 구 유고슬라비아는 일시적으로 통일국가가 되기도 했고,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영토분쟁지역이 되기도 했다.<sup>2)</sup>

이처럼 유럽에서는 유사 이래 영토의 취득과 상실을 되풀이 해오다가 서서히 오늘날과 같은 영토분쟁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근대 유럽의 영토취득과 상실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2) 근대 국제공법의 영토취득과 특성

국제법은 오늘날은 단순히 국가 상호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혹은 국가와 국제조직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그 해당 범위도 상당히 넓혀졌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합의를 기초로 해서 정립되는 관계를 비롯해서 그 범위에는 한층 한계가 있다. 또 19세기 후 점차로 국제재판이 행해지게 되었는데,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단적인 무력행사가 점차로 금지되는 등 그 適用 실시의 방식은 점차로 합리화 되었다. 그러나 재판도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관계를 비롯해서 한층 한계가 있고, 국가권력을 매개로 하는 관계를 비롯해서 국제법의 시행에 있어서 국가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남아있다.<sup>3)</sup>

근대 유럽에서는 오랜 역사동안 국경변동을 거치면서 영토취득방법을 국제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①무주지를 점령하여 「선점」하는 것, ② 장기간 계속적 평화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영토적 권원이 발생하여 「시효」에 의해 취득하는 것, ③조약을 체결하여 영토를 「할양」하여 취득하는 것, ④지형 변동으로 자연적으로 영토가 생기서 「첨부」에 의한 취득하는 것, ⑤무력 사용으로 영토를 취득하는 정복 등이 있다. 사실 이들 영토취득 방법 중 「첨부」를 제외하고는 유럽 강대국들이 약소국가의 영토를 할양하기에 부합한 논리들이다. 오늘날 국제화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논리들도 많이 있다. 특히 영토취득에 관한 전통

2) 이러한 다민족 다국가의 유럽은 과거 전쟁을 일삼아오던 독일과 프랑스가 부전을 약속하면서 유럽연합이 형성되어 유럽의 통합과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구소련과 구유고의 해체로 분쟁의 종언을 맞이하려고 한다. 日本經濟新聞社編, 『世界の紛争地圖』, 日本經濟新聞社, pp.13-15.

3) 田畑茂二郎, 『國際法』, 『日本歴史大辭典4』, 河出書房, 昭和49, 「A. A. 新興篆刻と國際法」, 『思想』, 1965년 10월.

국제법은 유럽강대국들이 총검의 위협 아래 제국주의시대에 할양과 정복이라는 방법으로 국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sup>4)</sup>

영토의 취득과 상실<sup>5)</sup>에는 헌법 등의 국내법이 정하는 주민의 합의를 비롯한 국내적 조치 뿐만 아니라, 국제법이 정하는 국가 상호간의 규제도 있다. 또한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질서의 변천에 따라 합법성과 불법성도 시대에 따라 변천되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군사적 정복이 영토취득이 법적 수단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윌슨(Wilson)의 민족자결주의의 제안에 따라 중부 유럽에서는 영토변경의 결정적인 표준이 되어 민족자결의 이름으로 일부 독립된 국가도 있었다.<sup>6)</sup> 당시 일본은 내지연장선상에서 영토 확장을 주목적으로 식민지정착을 시행했고, 당시 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과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식민지정착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양자 간에는 식민지정착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 국제질서에는 영토변경의 합법성에 관한 일의적이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원칙적인 규정은 없다. 구시대의 정복권조차도 완전히 폐기 되지 않고 있고, 자결권을 보장해주는 강제적 규정도 없다. 국제법은 반식민지적인 경향을 점증하고 있지만, 완전한 형태로는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토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규제원칙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법은 극소수의 예외를 포함하여 영토취득 및 영토상실에 관한 것을 규제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고, 그 방법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무력사용과 무력 위협은 널리 금지함에 따라 전통적인 영토취득 방법이 금지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권원을 만족스럽게 변경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법의 법적 절차는 필연적으로 안정을 위해 현상을 존중하는 실효적 점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안정과 질서는 영토의 경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많은 국가들은 국경이 결정되어 있다. 반만 중국과 인도, 중국과 소련 등과 같이 아직 국경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독도도 불안정한 국제질서에 속한다.<sup>7)</sup> 따라서 현행 국제법은 격동하는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수정 없이는 존재가치를 상

4) 한국도 일본의 총검에 의한 강압 아래 국권을 송두리째 넘겨주었다.

5) 국제법상 영토취득 및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영역이 공간적으로 확장, 축소되는 것을 말한다. 영토취득이란 취득국이 종래 무주지였거나, 또는 타국의 통치권에 복속하던 지역에 자국법의 정립권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토 상실은 국가가 영토를 포기하여 타국이 이를 선점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행사해오던 통치권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6) 이때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통치를 했는데 동화정책으로 내지연장선상에서 영토 확장에 여념이 없었기에 민족자결원칙을 거부했다.

7) 李漢基, 『韓國의 領土』,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pp.60-67.

실할 수 있다. 여러 국가의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규정을 보완하여 법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최대한 정치적인 조치는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법 적용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데, 국제법정은 critical date에 주권의 행사가 있었느냐 하는 증거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영토주권이나 권원에 관한 쟁점은 복잡한 것이 보통인데 실제적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복」이나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은 상대적 권원에 관한 재판사건에서 누가 많은 권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제시의 중요성이 없어진다.

### (3) 무주지의 선점론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주지를 두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부족의 조직 하에 살고 있는 원주민 집단에 대해 영토 편입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무주지 선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9세기에는 문명을 향유하지 못한 주민에 대한 선점은 당연한 것처럼 인정되었다. 원래 선점 법리는 근세초두의 초기 식민지시대에 스페인 포르투갈에 의한 「발견 우선의 원칙」을 배제하고 서구제국이 비유럽세계에 대한 식민지 획득을 위한 법리로서 제도화된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기독교 군주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무주지로 하여 원주민의 희망과 관계없이 법왕의 인허나 발견 선점으로 영유했다. 일본은 이러한 논리에 의해 유구와 北海道를 일본영토에 편입했던 것이고, 독도에도 이 이론을 적용했다. 일본을 포함한 서구제국의 무주지에 관한 자기분위의 해석이 등장한 것은 18세기 후반 이후의 현상이었다. 초기의 국제법학자(Vitoria 등)들은 반드시 국제법상 원주민들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과 도쿄재판에서 침략 전쟁으로 규정되어 일본이 무력과 협박으로 도취한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식민지국가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 또한 1961년 인도가 구포르투갈이 영유하고 있던 Goa를 무력으로 탈취했다. 유엔의 토의석상에서 같은 입장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제국주의국가에 선점당한 영토가 복귀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신흥국가와 소련은 식민주의는 악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력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아프리카국가들은 발견시대 입각한 힘의 논리로 발견 선점해 온 해외영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유럽중심의 국제법원칙이 비유럽지역에도 적용되어 보편화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선점의 명목을 바꾸어서 정복, 합병, 할양 등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도 했다.

서양학자들 중에는 통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다수 이다.<sup>8)</sup> 그 이유는 통고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통고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무주지 선점은 객관적인 무주지에 대한 선점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상대국이 있는 영토를 선점한 것이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통고 없이 진행된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무주지가 아니고, 주관적 혹은 구실로 선점하는 것은 통고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취득의 시효는 선점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실효적 점유에 관해서 설사 그것이 불법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함을 치유하여 정당화의 낙인을 찍어주는 구실을 한다. 다시 말하면 타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국가도 그 점유를 영구히 계속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영토취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은 시효 고정의 완성을 위한 시간을 규정하지 않았다.<sup>9)</sup>

#### (4) 중재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역사

유럽은 민족의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경의 변경도 많았지만 분쟁해결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시국가들 간의 영토문제를 중재재판으로 81-110건이나 해결되었을 정도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sup>10)</sup> 국경이 유동적인 시대로서 분쟁지역이 많았던 만큼 그 해결을 위해 중재재판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고대시대부터 조약과 국경이 준수되어졌는데, 당사자 간의 교섭으로 불가능했을 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중재재판이 널리 이용되었다.<sup>11)</sup>

그리스시대와 달리, 로마시대에는 국제재판의 관념이 인정되지 못했다. 대외관계를 그리스의 법문화와 달라서 기본적으로 정복에 의한 세계지배라는 방법을 힘에 의한 해결이 우

8) 국제법이론에 관한 내용은 李漢基, 『韓國의 領土』(pp. 71-74)를 참조바람. 국제법은 근대에 유럽에서 체계화되고 보편화되었으므로 그 이론은 국제공법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9) 1897년 미국과 베네주엘라는 국경분쟁을 중재재판에 위탁하여 재판으로 조약을 체결했다. 이때에 「50년에 걸쳐 대항적으로 점령하는 것과, 50년의 시효취득은 정당한 권원을 발생하게 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당사자가 시효의 규정을 정하면 시효가 유효하지만, 일반원칙은 될 수 없다. 영토취득을 완성하는 시기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서 양도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09년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Grisbadarna Arbitration에서 명백히 시효제도를 채택한 바가 있다. 중재판결은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스웨덴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들 보다 문제의 堤防을 다 일찍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판결했다.

10) 金子利喜男, 『世界の領土、國境紛争と國際裁判』, 明石書店, 2000, p.150.

11) 기원전 3100년경 전에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 기원전 1279년 이집트에서도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바가 있었다. 기원전 600년경에는 아테네와 메가라가 사라미스도의 영유권 문제를 스파르타 시민 5인이 재판관이 되어 판결했다.

선시되었다. 분쟁해결은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되었다.

중세시대에는 주로 로마교황에 의해 재판되어졌다.<sup>12)</sup> 교황의 재판권이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에는 군주주권은 교황에 예속되어 있었다.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대양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근해의 영유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영유권을 주장했다.

근세시대에도 중재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으로 13개 국가가 독립되어 1789년 연방으로 이행될 때까지는 주권국가였다. 1778년 분쟁 해결을 위해 연방규약을 제정하여 펜실베니아와 코네티컷트 간의 영유권분쟁이 1782년 중재재판으로 판결되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중재재판으로 해결되었다. 1794년에 제정된 제이조약에 의해 미국과 영국은 센트, 크로이쿠스강의 경계분쟁을 제3국도 함께 가담한 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 재판이 계기가 되어 19세기 구미제국은 중재재판을 널리 행하여 1900년까지 177건-200건 정도가 해결되었다. 법체계가 비슷한 영국과 미국은 중재재판이 일반적으로 정착되어있었다. 1875년에는 만국국제법학회는 ‘국제중재재판규칙안’을 채택했다. 1890년 영국과 독일간의 윌히슈만사건은 1911년 판결, 1891년 영국과 포르투갈의 파룻체란드 국경사건은 1905년 판결, 1898년 영국과 브리질 간의 기아나국경사건은 1904년 판결, 1886년 콜롬비아와 베네질란드 간의 국경사건은 1891년 국왕 판결과 1922년 중재재판으로 최종 판결되었다. 1899년에는 재판의 일괄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설중재재판소를 설치했다.<sup>13)</sup>

이처럼 근대에 들어와서 유럽에서는 인류의 이성과 공정한 관념을 법으로 정하여 영토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시대였다. 그런데 동시대의 일본은 타국의 영토를 침략하여 영토 확장에 의한 국력팽창에 여념이 없었다.<sup>14)</sup>

12) 1493년 교황 알렉산드 6세가 대양의 영유권에 대한 재판을 결정했고, 1885년 스페인과 독일간의 카롤린제도의 분쟁을 교황 레오8세가 중재했다. 칠리와 아르젠틴은 바우로 2세의 중재를 받아들였고, 1980년 비구루해협에 관해서는 교황이 해결책을 내놓아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절대 왕정시대에 들어가는 중재재판이 상당히 사라졌지만, 1175년 오루혼소8세와 산쵸6세의 영지분쟁은 영국의 헨리2세의 중재로 해결되기도 했다.

13) 유럽의 판례는 金子利喜男의 『世界の領土、國境紛争と國際裁判』(pp. 150-154)를 참조 바람.

14)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은 중재재판에 의한 영토분쟁을 해결한 적이 단한 건도 없었다. 그 이유는 분쟁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중재재판으로 해결 가능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 3. 일본의 국제공법 수용 과정

국제법은 국가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16.7세기 유럽사회에서 하나의 법체계로서 자각되어 근대시대에 체계화 되었다. 지금의 국제법은 근대국제법이 발전한 것이다. 이처럼 근대국제법은 근세초두 유럽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서서히 형성된 것이다. 처음 국제법의 주체로서 등장한 것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교통, 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함과 더불어 점차로 한계를 초월해서 유럽 이외의 비기독교 국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일본은 1854년 미국과 神奈川조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점차로 근대국제법의 법적 테크닉에 익숙해져갔다. 명칭정부가 1868년에 발령한 개국의 포고 속에 「宇内の 공법」의 원리를 수용한다고 하여 국제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처음 일본에서는 이를 「만국공법」이라고 불렀다. 국제법이라는 말은 1873년 箕作麟祥이 우루지(ウールジ)의 서적을 번역할 때 그 속에 처음 등장한다.<sup>15)</sup>

#### (1) 神奈川조약

1854년 神奈川조약이 일본에서 처음 국제법에 의해 맺어진 조약이다. 일본은 이 조약 체결로 그 이후 체결되는 조약의 기본이 되었다. 神奈川조약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태평양 횡단항로 개척과 북태평양의 포경업을 보호하기 위해 1853년 필모아 미국대통령의 친서를 일본에 전달하고, 이듬에 다시 방일하여 4회에 걸친 미일대표간의 회담으로 1954년 3월 31일 「일미화친조약」을 체결했다. 그 주된 내용은 편무적인 최혜국조항(제9조)을 비롯해서 下田, 函館 두 항을 개항하고 물, 식료, 석탄, 그 외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는 일본관리가 결정하고 금, 은화로 지급한다.(제2조), 물품공급은 그 지역의 관리가 담당하며 사적인 거래는 금지한다.(제8조), 미국의 표류민을 구제하여 도와준다(제3,4조)는 것이다. 그 외에 6월에 13조로 구성된 부록이 결정되어서 개항장의 세규 등을 정했다. 이 조약은 무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서 막부가 최후의 일선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데, 당초 일본이 의도했던 쇄국령의 지속과 기만책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미국은 당초 의도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었

15) 田畑茂二郎, 『國際法』, 『日本歴史大辭典4』, 河出書房, 昭和49, 『A. A. 新興篆刻と國際法』, 『思想』, 1965년 10월이 있음.



고, 막부에게는 충격적이 조약이었다. 미국에 개항됨으로써 일본을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와도 유사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sup>16)</sup>

### (2) 일러 화친조약

1855년2월7일 러일 화친조약을 체결했는데, 영토와 관련해서 맺은 일본의 최초 조약이다. 항으로서는 서명했다.<sup>17)</sup> 당초 러시아 전권 프차친은 樺太(사할린의 일본명칭)의 경계에 대해 남부 樺太의 아니와만을 제외한 북부 사할린도를 러시아령으로 한다고 했다.<sup>18)</sup> 일본은 자신들이 아이누와의 지배자이므로 아이누<sup>19)</sup> 거주지는 모두 일본령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白主에서 북위 130리까지 아이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여 이곳이 일본령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프차친은 여기에 동조했다.<sup>20)</sup> 그러나 프차친은 조약서를 정서하는 과정에 황제의 수정지시를 받게 되어서 일본이 주장했던 「蝦夷 아이누」를 「蝦夷島 아이누」<sup>21)</sup>로 수정되어 결국 일본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sup>22)</sup> 그러나 일본은 「항 후 러시아와 일본의 영역은 에도로프(擇捉)와 우룻프 사이로 한다. 에도로프 전도는 일본령으로 하고, 우룻프와 그 이북에 있는 쿠릴 전도는 러시아령에 속한다. 樺太는 러시아와 일본의 분계를 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한다」고 일본의 주장을 관철시켰던 것이다.<sup>23)</sup>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일본은 아이누모시리를 분할하여 최초로 인접하는 국경이 성립되었다.

### (3) 「일미수호통상조약」

미국의 전권 하리스는 피아스 대통령의 사명을 받고 1954년 합의<sup>24)</sup>하지 못했던 일본과 통상조약체결을 위해 내일했다. 하리스는 에도에 입성하여 양국대표가 13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칙령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리스가 군함을 가나가와 항에 정박하여 통상조약을

16) 于野俊一, 『神奈川條約』, 『日本歴史大辭典3』, p.70.  
17) 한편 1855년4월8일 막부는 蝦夷地가 일본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적 토지로서 松前藩주에게 蝦夷地 전토를 몰수하도록 명했다.  
18) 和田春樹, 『開國一日露國境交渉』, 『日本放送出版協會』, 平成3, p.116.  
19) 사할린 거주 아이누민족에도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민족이 각각 특정한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20) 和田春樹, 『開國一日露國境交渉』, pp.155-157.  
21) 蝦夷島는 지금의 홋카이도를 가리키는데,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아이누에 국한한다는 것이었다.  
22) 和田春樹, 『開國一日露國境交渉』, pp.161-167.  
23) 和田春樹, 『開國一日露國境交渉』, pp.161-167.  
24) 1855년 러일화친조약에서는 下田와 函館의 거주권과 치외법권을 규정하는 9개조의 조약을 조인하였다.

강요했다. 결국 1858년 7월29일 14조와 무역장정 7칙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양국의 수도와 개항장에는 외국대표 영사를 주재시켜서 국내여행을 허가한다. 일본과 서구국가 등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조정한다. 神奈川、長崎、新潟、兵庫 등의 개항장을 증설하고 개항기일 지정, 개항장에서의 거류, 토지를 빌리고, 건축물 구입을 허가한다. 江戸와 大阪를 개시하고 양국 인민이 직접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 화폐는 동종동량에 의한 통화, 세율의 협정(수출세는 일률적으로 5%, 수입세는 20%), 거류 미국인 유보구역은 개항장의 10리 사방으로 한다. 시교예배의 자유, 영사재판권 설정 등이다. 본 조약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1859년7월부터 실시되고 일본은 세계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게 되었고, 이 조약은 일본의 꾸준한 노력으로 1899년 개정될 때까지 존속되었다.<sup>25)</sup>

일본이 미국에 강요당한 조약은 무역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서 국권을 제한하는 영토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일본이 최초로 만국공법, 즉 조약을 통해 일본의 의사외는 무관하게 유럽에게 강요당한 조약이었다.

일본은 막말부터 서구열강의 동진에 의해 조약을 통해 서양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sup>26)</sup> 일본이 문호개방 당시 유럽과 맺은 조약은 불평등조약이었으나, 서서히 일본은 조약 개정을 시도하여 1899년 陸奧에 의해 완전히 평등조약으로 개정되었다. 일본은 유럽에 강요당한 불평등조약과 같은 것을 조선 등의 아시아국가에 강요하여 국권을 침탈하는 데 악용했던 것이다.

## 4. 근대일본의 국제공법의 적용과 오용

### (1) 일본의 대외관과 국제공법과 상관관계

근대일본은 부국강병을 국가발전의 목표로 삼고 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주변지역의 영토를 확장하여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으로 삼았다. 일본의 신정부는 근대적인 육해군을 조직하고 소속군인들의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기 원했다. 그래서 그들의 藩 의식에 의한 내분을 탈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 조선과의 전쟁 혹은 대만 야만인에 대한 시위행동으로 병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25) 白井勝美, 「일미수호통상조약」, 『日本歴史大辭典7』, pp.492-493.

26) 위의 표는 日本外務省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1840-1945』(原書房, 昭和50)을 도표화했음.

우선적으로 대만인의 유구인 살해사건은 중국의 지배권 밖인 대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중국정부에 예고 없이 대만에 약간의 군대를 파견하여 점령해야 한다. 일단 한번 장악하게 되면 점령한 곳은 계속 점령이 손쉽다. 대만의 지리적 위치는 중국해와 일본해의 입구에 있어서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대만의 영유는 일본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유구와 대만의 합병 및 식민지개척에 대해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국황제를 방문하여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중국황제는 세계의 군주라고 자칭하여 타국 사절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서양제국이 주저하고 있는 문화개방에 대해 중국황제가 스스로 사절을 접견하도록 중국정부에 압력을 넣음으로서 일도양단으로 중국관계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이것이 승사되지 않으면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전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전쟁의 목적은 유구합병에 대한 간섭배제, 대만 획득, 중국의 지위를 떨어뜨려서 일본의 국위를 떨쳐서 일본국가의 발전과 평화를 지속시킨다는 것이었다.

조선에 대해서는 2,3년 동안 일본정부를 굴욕적인 행동을 대하였기에 징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사할린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여 조선과 전쟁을 할 경우 러시아의 불간섭을 받아내려고 한다.<sup>27)</sup>

봉건시대의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요구에 의해 개국되었지만, 일본은 서구열강의 일본간섭을 식민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서구화를 추구하면서 조선, 중국 등으로 일본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단지 유럽의 추구했던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일본의 내지의 연장선상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대외정책의 방법으로는 “군비를 확장하여 국위를 해외 각국에 떨쳐서 조종의 선제의 영혼에 보답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 외국과 교류를 할 때는 국제공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는 고관의 말로도 유추할 수 있다.<sup>28)</sup> 해외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만국공법을 수단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주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일본의 침략적인 행위가 대외적으로는 정당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대외영토확장의 수단으로서 만국공법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주권을 획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은 주변국가에 대해 최종적인 영토편입의 목표를 은폐하여 노골적으로 조약을 강요하여 주권을

27) 이는 영국공사 파크스가 일본에 주재하면서 판단한 일본의 대외관이었으나, 당시 상황을 잘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사할린을 분할하여 그 절반을 일본영토로 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

28) 1968년 1월 15일, 和歌山藩主 徳川茂承, 福岡藩主 黒田長知의 家記의 기록임. 『對外和親, 國威宣揚の報告』, 『북고기』, 徳川茂承家記, 黒田長知家記. 전계서, 『對外觀』, 1968, p.3.

침탈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해갔다. 만국공법을 잘 알지 몰랐던 주변약소국은 약소국을 위한다는 만국공법에 의한 조약에 쉽게 동조했고, 일본은 비웃는 듯이 주변 약속국을 미개국이라고 까지 하면서 조약을 강요하여 일본의 국익을 확장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국경확정이라는 이름으로 만국공법을 악용하여 주변약소국가 및 소수민족이 철저히 돌보지 않고 있던 주인 있는 섬조차도 무주지라고 우기고, 심지어는 강력한 권력체를 갖고 있지 않은 주변약소국은 모두 무주지로 간주하여 만국공법의 무주지 선점논리로 일본영토에 편입을 시도했다.

일본의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은 “서양인들이 말할 때는 국제공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국제공법은 소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한 자가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벨기에와 스위스는 유럽에 있어서 가능했지만, 동양에서는 안남과 버마와 같은 운명이 된다. 그러나 아시아의 소국에게는 이 같은 만국공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잘 알고 있었다.<sup>29)</sup>

## (2) 일청수호조규

일본은 1854년 미국과 수호조약, 1858년 통상조약 등의 불평등조약을 강요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만국공법을 적용하여 아시아에 대해 탈아정책을 실시했다. 일본이 맨 먼저 시행했던 탈아의 대외정책은 일청수호조규였다. 일본은 중국이 서양제국과 체결한 조약과 비등한 1861년 청국과 독일 간에 체결된 조약을 모델로 청국에 조약체결을 강요했다.<sup>30)</sup>

일본의 청국조약체결을 유럽제국은 공수동맹을 체결하는 것으로 우려했다. 그래서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유럽 각국의 주청공사와 상해주재영사에게 일청조약 체결의 알선을 요청했다.<sup>31)</sup> 여기에서 일본은 청국에 대해 유럽제국과 체결한 내용으로 탈아를 요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은 일본의 최혜국대우 요구에 반발했고, 중국인이 일본내지를 통상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결국 중국의 저항으로 중국초안을 바탕으로 조약안을 조정하여 「상호 영사재판권 인정, 관세도 구미열강으로부터 부과된 것을 서로 인정하는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최혜국 대우를 삼입하지 못했고, 일본인의 중국내지통상권을 합의하지 못했다. 게다가 중국은 구미열강이 청국에 대항할 경우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29) 『東洋諸國は万国公法の利益を分取せず(東京横浜毎日新聞)』, 전게서, 『對外觀』, pp.226-227.

30) 藤村道生, 『明治初年におけるアジア政策の修正と中國一日清修好條規安の検討』,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XLIV, pp.18-20.

31) 石井孝編, 『幕末維新期の研究』吉川弘文館, 1978, p.24.

은 우의를 기반으로 타국으로부터 주권 침해할 당할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하면 상호 원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의 청일수호조규는 일본 국내외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일본은 영국, 미국, 독일의 반발에 대해 공수동맹과 같은 상호 원조가 아니라 는 것을 설명했고, 청국에 조약내용의 재수정을 시도했으나, 청국은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부분적인 수정으로 조약이 비준되었던 것이다.<sup>32)</sup>

1871년9월13일(양력 7월29일) 일청수호조규가 체결되었는데, 일본은 애당초부터 중일 공수동맹과 같은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열강에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일본이 탈아의 일원으로 유럽열강들의 도움으로 중국에 조약을 강요하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의 저항으로 일본의 의사에 반하는 대등한 조약이 되고 말았다.

### (3) 일본의 유구 일본판도 선언과 대만 원정

근대 이전의 유구는 중일 양국에 소속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1872년 10월 16일(양력 9월 14일) 명치천황은 유구국왕의 사절을 맞이하여 유구국왕 尙泰를 유구번왕으로 하여 회족에 해당하는 칙서를 내려서 유구가 일본 판도임을 성명했다.<sup>33)</sup>

또한 유구를 지배한 鹿兒島현 당국은 1872년 8월 31일(양 7월 28일) 유구국왕 사절단이 鹿兒島현에 도착했을 때 유구의 속도인 宮古島民이 대만에서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여 황위를 해외에 떨쳐서 문책을 위한 사절을 보내어 대만을 정벌한다고 하는 대만정벌론을 주창했다. 군함을 빌려서 소굴을 침범하여 거두를 섬멸하고 황의를 해외에 떨치고, 도민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주일미국공사 데룽그가 일본이 유구를 일본 판적에 편입한다는 방침을 통보받고 1854년 미국과 유구가 체결한 조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데룽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만 원정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데룽그는 “대만의 사정에 능통한 아모이(廈門)주재 미국영사 리젠들을 소개해주었다. 게다가 데룽그는 대만은 비옥한 토지로 훌륭한 향만도 있다. 외국인에게 지극히 편리한 장소이고 외국인 중에서 이곳을 탐하는 자도 있다. 대만은 지나(중국)의 관할이지만, 중국이 돌보지 않아 방치된 곳이다. 취하는 자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일본의 대만 점령을 부추겼다. 처분방안으로서, ①죄를 묻는 사절을 파견한다. ②원주민과 교섭하여 일본인을 폭력으로 학대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③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정책 관련은 교섭으로 처리하는 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력

32) 石井孝編, 『幕末維新期の研究』, pp.24-26.

33) 宮内廳編, 『明治天皇紀』第2卷, 吉川弘文館, 1969, pp.755-756.

으로 처리하고 후에 단속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제언했다. 일본은 무력행사를 원했고, 이에 대해 처리 순서로서는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와 기한부로 인민을 보호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원주민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리젠돌과 협의하여 바로 무력행사를 하지 말고 원주민과 직접 교섭할 것을 제안했다.

리젠돌도 데롱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권력이 대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명언했고, 또 중국과 교섭을 피하고 원주민과 직접 교섭할 것을 제언했다.<sup>34)</sup> 표류민 보호를 위한 등대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여 등대와 포대를 설치할 것, 원주민과 평화적으로 교섭하여 대만을 일본의 군사적 거점으로 삼을 것을 제언했다.<sup>35)</sup> 리젠돌은 포대와 등대의 건설을 위해서는 중국과 먼저 교섭을 해야 하는데, 중국이 이를 반대하면, 그때에는 건설용지 차지에 관한 교섭을 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교섭의 진행순서에 대해서는 대만 지리 등에 능한 외무성법률고문 페샤인 스미스와 상담할 것을 권했고, 또한 “대만은 중국입장에서 타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만은 어느 나라가 관할해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아시아국가 중에서 특히 일본에 관할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리젠돌과 데롱그 두 사람은 일본에 같은 제언을 했는데, 리젠돌이 데롱그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40만 명의 불평무사가 있기 때문에 1만 명 정도는 쉽게 출병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대만정벌로 인한 중국과 국교단절을 우려하자, 리젠돌은 “만국공법에 의하면 인민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정부와도 관계가 있다. 중국정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보호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하면 된다”고 자문했다.<sup>36)</sup> 사실 일본은 당초 대만정벌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국제공법에 능통한 리젠돌의 자문에 의해 본격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일 미국공사였던 데롱그는 리젠돌을 소개함으로써 일본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sup>37)</sup>

데롱그와 리젠돌은 중국과 대만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을 했다. ① 무력행사를 하기 이전에 외교적 평화적 성격의 모든 온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언했다. 일본은 이들의 제안대로 당장 사절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사절단에게 친히 황제를 배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서전달, 조약비준을 행하지 말 것을 훈령했다. ② 유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제한적인 일본의 지배권을 주장한다. ③ 대만인의 유구인 살해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만족스러운 약속을 중국정부로부터 획득한다는 것이었다. 데롱그와 리젠돌은 일본정부 내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대만출병계획

34) 外務省編, 『大日本外交文書』 第7卷, 日本國際協會, 1939, pp.13-15.

35) 外務省編, 『大日本外交文書』 第7卷, pp.5-8.

36) 外務省編, 『大日本外交文書』 第7卷, pp.13-15.

37) 石井孝, 『明治初期の國際關係』, 吉川弘文館, 1977, pp.31-33.

을 피하고 일단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을 제언했다.<sup>38)</sup>

결국 일본은 출병을 단행했고, 그 결과 일본이 대만 원주민의 유구인 살해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유구가 일본영토의 일부임을 인정받게 된 셈이 되었다. 중국의 항의와 전염병의 만연으로 일본군의 사망하여 대만점령까지는 실현하지 못했다.

#### (4) 樺太/千島교환조약

러일 양국은 1954년 화친조약을 체결하여 아이누모시리지역을 분할하여 국경을 결정했다. 쿠릴열도에서는 擇捉와 우룻프를 경계로 했고, 사할린에서는 잡거지로서 현상 유지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사할린 전도의 영유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초대주일 영국공사 오르콕이 러시아는 무역에는 관심이 없고 영토만 획득하려고 한다고 지적했고, 주일대리영국공사 닐도 러시아는 자국 혹은 타국의 무역의 발전을 지지하지 않고 영토만을 생각하고 있고, 영토야심의 대상은 사할린 對馬, 蝦夷의 3곳이라고 지적했듯이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의 대일본정책의 기초는 시장 확대에 있는데,<sup>39)</sup> 러시아의 대일정책은 시장 확대와 같은 자본주의적인 요인이 아니고 오로지 영토문제에만 있었다.

러시아해군은 1861년 쓰시마에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영국해군이 강하게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했다.<sup>40)</sup> 蝦夷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극동의 부동항이 없어서 函館가 러시아 함대의 주요기지였고, 또 蝦夷地의 석탄과 목재, 광물자원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영토야심의 대상이었다. 사할린은 러일 잡거지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러시아 영토가 되어 가는 상태였다.

막부의 유럽파견사절단이 1862년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였을 때 사할린 국경문제를 논의 했다. 사절단은 북위 50도선을 주장했는데 러시아는 48도선을 주장했다.<sup>41)</sup> 주일영국공사 파크스는 러시아가 남하하여 蝦夷地를 점령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러일 양국은 1867년 페테르부르크에서 일러間樺太島仮規則을 체결하여 아니와해협을 경계로 하여 사할린전도를 러시아령으로 하고, 쿠릴열도에서는 우룻프 근방의 치루보이, 브랏츠

38) 石井孝,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有隣堂, pp.11-15.

39) 石井孝,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pp. 195.

40) 称津正志, 『文久元年露艦ポサドニックの對馬占領に就いて』, 『法と經濟』 第2卷2-4号 参照.

41) 福地源一郎, 『懷往事談』 民友社, 1897, pp.80-87.

치루보이, 브로톤 3섬을 일본에 양도한다, 이들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할린은 현상유지상태로 공동 영유한다고 약속했다.

주일영국공사 파크스는 러시아가 사할린을 전적으로 점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할린 점령은 아마 1867년 페테르부르크에서 체결된 협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國後의 점령은 충격적이라고 했고, 이는 중대한 새로운 성격의 명백한 침략이라고 했다. 擄捉 점령을 포함해서 蝦夷자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파크스는 러시아의 사할린 전도의 영유를 기정사실로 묵인하고 있었는데, 蝦夷地 침략의 위협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파크스는 일본정부에 대해 蝦夷 북부의 특정한 항구를 개항하게 되면,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 있어서 일본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sup>42)</sup>

파크스의 제안에 대해 일본정부(岩倉具視)는 사할린의 쿠슌코탄을 개항하여 거기에 府를 건설한 후 宗谷를 개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크스는 사할린 개항은 이미 늦었다고 하여 蝦夷地 개발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권했다.<sup>43)</sup>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주민 300명과 관리 30명을 아니와만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했고, 아니와만지역의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정부(岩倉具視)는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할 것이고 만약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이 충돌을 피할 것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일본에 폭행을 가해올 경우 일본의 대처방법을 파크스에게 물었다. 파크스는 일본은 온화한 타협적인 방침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자문했다. 만약 갑자기 분쟁이 발했했을 경우는 函館주재러시아영사가 문제를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르에 있는 러시아당국과의 교섭을 권유했다.

일본정부(岩倉具視)는 1867년의 러일협정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재차 북위50도선을 제의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파크스는 그 협정을 체결한 일본사절은 구정부의 대표였다고 하더라도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일본정부의 대표였기에 신정부는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고, 일본의 요구를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1867년 협정에서 공동영유조항을 이용해서 착실히 사할린을 완전히 영유하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사할린에 집착하면 蝦夷地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여 蝦夷地를 명확히 할 것을 권유했다. 岩倉具視는 1867년의 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파크스는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파크스는 코모란트호의 보고를 받고 사할린 포기론이 결국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42) 外務省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1840-1945』原書房, 昭和51, p.32.

43) 外務省調査部, 『大日本外交文書』第2卷 第2冊, pp.465-470.



그 대가로 다른 러시아령(우룽프 및 그 부근이 작은 섬)과 교환하든가 아니면 보상금을 받아내도록 자문했다.

러시아는 현재 사할린의 5분4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도 영유를 원하고 있고, 일본이 사할린 영유를 포기할 경우 우룽프섬 또는 2개의 섬까지도 양도할 수 있고, 혹은 배상금을 지급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이 사할린 일부에서 독자적인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일본인에게 어업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파크스는 러시아정부의 의향을 파악하고 사할린 포기론을 주장하면서 일본정부에 대해 흠 향아리와 쇠향아리가 부딪히는 것과 같이 약소국과 강대국이 영토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득했다. 일본정부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파크스는 일본정부(岩倉具視)의 요청으로 상호 유리하게 평화적으로 체결한 구미제국간의 영토양도의 여러 선례에 관한 각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이 선례는 일본국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불명예라고 생각하고 있던 정부요인을 설득하는 데 유용했다고 한다. 파크스는 자발적으로 영토를 교환하고 또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불명예가 아니라고 설득했다.<sup>44)</sup>

1870년초두 일본정부가 적당한 보상으로 사할린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하려고 할 무렵, 주일미국공사 데롱그가 갑자기 사할린 국경문제를 중재조정하겠다고 문의해왔다. 데롱그는 바로 잡거지는 원래 좋지 않으므로 신속히 경계를 나누는 것이 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데롱그에게 일본을 위해 사할린문제를 미국대통령이 러시아를 상대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가장 파탄상태에 놓여있었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sup>45)</sup>

러시아는 러일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상대로서 미국이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러시아 어업기지 및 부근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해역에 함대를 투입하여 약탈을 합법화하려는 협약체결을 러시아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데롱그가 미러 간의 우호관계를 명목으로 조정제안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이유로 불가능했다. 러시아정부는 미국의 조정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영유권교섭의 전권을 아무르주지사에게 부여하여 배상금으로 사할린의 일본영유 부분을 러시아에 양도할 것을 일본전권과 교섭할 의향이 있다고 표명했다. 파크스는 하루하루 사할린을 지배하는 러시아의 세력이 증가하여 러시아의 지위가 증대되는데 비해 일본의 지위와 중요성이 감

44) 石井孝,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p.230.

45) 外務省調査部, 『大日本外交文書』第3巻, p.81.

소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해결을 지연하면 할수록 일본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자의 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러시아와 교섭할 것을 권유했다.

파크스는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서 영토를 교환하든가 아니면 배상금을 받든가 이를 기초로 하여 기회를 잃지 말고 호의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했다. 사할린 영유를 포기할 경우에는 석탄채굴권, 어업권을 확보할 것을 자문했다. 또 일본 수중에 남을 사할린의 면적과 러시아가 교환하려고 하는 우룻프섬, 부속제도와 거의 같은 면적으로 사할린일부를 할양하는 것은 전혀 국가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파크스는 러시아의 주장을 수용하여 일본에 재촉했다.

테룽그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일본정부에 요구했고, 일본이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무성에 대해 사할린도의 최초이 발견자이며 식민한 자는 일본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사할린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미국의 이익증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테룽그의 요청을 받은 미국무성은 러시아의 의향을 타진하였는데, 러시아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조정의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sup>46)</sup>

일본과 러시아는 미국의 조정을 중지하기로 표명하고, 직접 교섭에 임했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일단 사할린 전도의 영유를 주장했다. 러시아는 1867년의 교섭을 지적하여 러시아가 전도를 영유하는 대신 쿠릴열도의 작은 섬을 일본에 양도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사할린 남부의 50도선을 주장했다.

1871년1월 러시아는 동경에서 파크스와 회담하여 동양 일국의 문제에 유럽의 특정국가 조정에 나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대일교섭조건으로서 사할린 전도를 러시아가 영유하는 대신에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든가, 현재 일본인이 점거하고 있는 사할린 일부에서 어업권과 석탄채굴권을 일본인에게 제공하든가, 사할린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일본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게 대하는 동등한 재판권을 부여하는 것을 열거했다. 러시아는 파크스가 러일간의 직접교섭을 제안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미국정부는 러시아의 요구를 바탕으로 중재조정을 하겠다고 러시아에 타진해왔다. 일본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중재조정하려고 했던 테룽그의 주장은 붕괴되었다. 테룽그는 정규교육을 그다지 받지 않은 독학의 범류가였다. 공무의 경험도 그다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산이 많은 캘리포니아와 내바다 2주에서 정치를 담당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테룽그의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테룽그의 아마추어 외교에 선도되었기 때문이다. 테룽그의 조정내용은 파크스가 지적한 것대로 국제조약상 이례적인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국제정세상 미국의 조정이 불가

46) 外務省調査部, 『大日本外交文書』第3卷, pp.113-114.

능한 것을 알고 파크스의 권고대로 일본이 직접 대일교섭에 임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3개조로 된 조약문에 합의했다. ①잡거조약을 제외하고 러시아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전도를 일본이 소유한다(제1조). ②전도를 반으로 나누고 양국의 잡거를 중지하고 각국이 소속지역으로 이전하고 러시아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제2조). ③전도를 러시아에게 양도하고 그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일본이 취한다(제3조).<sup>47)</sup>

여기서 일본은 최종적으로는 전도를 러시아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의향을 갖고 있었다. 결국 일본정부는 파크스가 주장한 선으로 사할린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榎本가 주일공사로 임명되고 3개조를 결정했다. ①양국인의 잡거를 그만두고 경계를 정한다. ②우룻프섬에서 캄차츠키반도의 모든 섬을 일본에 양도하도록 하고 樺太를 러시아에 양도한다. 樺太에서 거주영업하고 있는 일본인은 면세로 하고 樺太의 요지에 영사관을 두고 일본인이 관리한다. ③樺太를 일정액으로 러시아에 매각하고 우룻프 및 그 북의 2개 섬을 일본에 양도하고 樺太에서의 일본인 거주영업을 모두 면세로 하고 요지에 영사관을 둔다고 결정했다. 결국 사할린 전도를 러시아가 영유하고 쿠릴열도 전도를 일본이 영유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 조약은 치외법권을 부정하고 일본에 이익이 많은 조약이라고 평가되어졌다.<sup>48)</sup>

일본은 러시아의 蝦夷地 점령을 경계하는 영국공사 파크스의 자문으로 사할린 국경조약에서 유럽열강과의 교섭에서 외교적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일본은 조약으로 영토를 분할할 수 있다는 국제공법을 익혀갔던 것이다.

### (5) 조일수호조규

근세의 에도시대에는 조선과의 외교를 대마도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근대일본의 신정부는 대조선 외교를 외무성이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주러일본공사 榎本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을 개국시키려고 한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러시아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이익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sup>49)</sup> 명치신정부가 차별적인 태도로 조선에 문호개방을 요구했을 때, 일본의 무례한 행동을 비난하여 조선은 교류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정한론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일본정부(岩倉具視)는 구미제국이 일본에 전개한 정책을 이번에는 탈아의 선진국의 입

47) 日本史籍協會編, 『岩倉具視關係文書』第7卷, 1934, pp.447-448.  
48) 岡義武, 『國際政治史』~岩波全書, 1973, p.101.  
49) 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大成』第13卷, 嚴南堂, 1966, p.162.

장에서 조선에 적용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파크스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일본의 입장에 동조했다. 파크스는 일본의 조선정책은 1874년 대만원정보다 훨씬 가치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고, 러시아가 조선영토의 일부를 할양하여 국경을 확장한다거나, 조선이 외국의 속국이 되는 것보다 독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sup>50)</sup> 또 파크스는 일본 군함이 북방의 요새인 영흥을 비롯해서 전 해안선을 측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일조관계가 악화되어 일본과 러시아가 동조하여 조선을 공격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파크스는 조선의 공동점령은 러시아가 사할린에서 공동점령으로 얻는 이익보다 러시아에 한층 큰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여 영국정부에게 거문도점령을 권고했다. 또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사할린을 양도하고 그 교환으로 일조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정부는 1874년 일러간의 국경문제를 해결한 후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여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875년 8월22일 러일양국은 樺太·千島교환조약이 체결되고 나자, 일본정부는 군함 2척을 부산에 파견하여 사절단에게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훈령을 내렸다. 이때에 보아소나드가 자문을 맡고 있었다. 보아소나드는 1875년9월30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사절단의 사명으로서, 강화도사건의 보상 및 宗씨 이래의 舊交를 계속할 것과 보상을 받은 후에 장래 국교를 맺어야한다. 일본이 조선에 대해 취해야할 행동으로서, 조선은 일본의 요망사항에 응해야하고, 만약에 조선이 ①사절에 대해 굴욕감을 준다든가, 사절을 인정하지 않고 폭행을 가한다. ②사절을 접수하지 하지 않고 폭행을 가하거나, 요청서에 회답을 하지 않는다. ③새로운 조약체결요구에 대해 중국의 명령 없이 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지연한다. 이때에 ①의 경우는 조선을 질책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 일본이 임기조치를 취하기가 가장 좋다. ②의 경우는 사절보호를 위해 강화성에 군대를 배치시키고 강화관청에 요구하여 사절을 이끌고 당장 왕성(궁성)에 들어간다. ③의 경우는 양국의 구교가 중국의 중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강화도사건의 보상이나 신조약도 중국을 경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직접 조선에 요구해야 하고 만약 조선이 중국에 문의하여 일본요구에 응한다면 그 기간에 일본군대를 경성에 주둔시켜서 강화성을 점거하여 국제공법에 의거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법(전쟁결과에 의한 할양 또는 합병 - 필자주)으로 난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자문했다.<sup>51)</sup>

또 일본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서는 ①부산항 이외에 강화항구에 무역지구를 정하는 것, ②조선해의 항해자유, ③강화도사건을 사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자신

50) 石井孝,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p.295.

51) 外務省編, 『日韓外交資料集成』第1卷, pp.4-8.

들의 주장만 내세우거나 허식으로 임하여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폭행이나 굴욕적인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경한 자세를 임해야한다고 했다. 이를 경우에는 사절은 사사로운 양국관계를 단절하고 국가에 대한 굴욕적 행위에 보상하지 않으면 일본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국교단절의 국서를 남기고 곧 귀향하여 복명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사절의 체면을 최대한 살려야한다」고 권고했다.<sup>52)</sup>

또 『보아소나드』는 1875년11월9일 일본정부에 대해 조선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국제법상 조선침략의 합법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sup>53)</sup>

“특히 조선왕 그 영지를 외국정부에게 분할할 때 영지를 외국 소유로 할 경우 약탈의 성격이 있는 없는 간에 바로 항거할 수 있어야한다.” “조선은 완전한 독립국이 아닌 중간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조선은 자신 스스로 외국에 대해 범한 폭언을 보상할 방법도 또한 중간적인 방편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조선을 완전한 주권국가로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보아소나드의 국제법론에 의해 국제법은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면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우선 조선의 영지 전부 또는 일부를 약탈할 목적 없이 조선에 파견하는 사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征討使를 준비한다. 그리고 정벌사의 배가 출발할 때에 일본은 우선적으로 강화의 수단으로 그 국기를 받아주는 치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만약에 저항하면 적절한 시점에 병력을 동원하여 중국에 대해 공공연히 만족할만한 요구를 한다. 중국에 대해 일본, 조선 양국 간의 친목 교제를 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선과의 사건으로 일본과 중국 간의 친목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일본이 만약 중국에게 조선 영지를 약탈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조선의 영토를 보전해주겠다고 말하여 아무런 욕심이 없는 듯이 하여, 이 일이 명목상 중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첫째로 일본이 수시로 중국에 주장해온 영지의 점령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군주권 장악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둘째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대응은 후일 일본을 후회하게 할 것이다. 만일 일본이 조선을 문책할 경우 조선에 일본이 스스로 행한 부정직을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직을 조장하든지 전쟁을 오래 끌어서 막대한 비용을 들게 될 것이다.

조선이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또는 독실독탄(사람 몸에 닿으

52) 外務省編, 『日韓外交資料集成』第1卷, pp.4-8.

53) 『보아소나드의견서』, 『조선사건에 관한 제2의 각서의 건』, 市川正明編, 『日韓外交史料(1) 개국외교』, 原書房, pp.37-40.

면 폭발하는 탄약) 또는 육지에 지뢰를 묻거나, 바다 속에 수뢰를 묻는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면, 일본은 조선 영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연히 점령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영지를 점령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상당한 보상과 만족스럽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파크스도 조선문제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본정부에 자문했다.

중국이 조선의 중주국이므로 중국이 강화도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한다면 조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이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배타적 지배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되고, 또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러시아가 남침을 할 수 있다. 조선을 개국을 일본이라는 1개국에 맡기는 것 보다는 중국과 일본에 많은 이익을 주는 영국의 주도권으로 서양열강이 공동으로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 것이 사실상 1개국 또는 2개국이 분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또 조선은 중국, 일본과의 무역통상로이기에 이를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의 침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주일미국공사 빈감은 타국이 우호적으로 증개하여 조일간의 조약을 체결하여 충돌을 방지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공사 상관탕과 독일공사 아이젠데히아는 군함을 대동한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일본의 의도에 동의했다.<sup>54)</sup> 주중미국공사 웨이드와 주일영국공사 파크스는 일본이 조선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했을 때 러시아가 호응하여 일러 양국에서 조선을 분할하는 것을 우려했다.

일본정부는 일본이 조선에 군사행동을 취할 때 중국의 입장에 관해서 중국정부에 타진했다. 일본이 조선을 1개의 독립국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국은 중국과 조선은 상국-속국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은 속국의 개념에 대해 중국소유의 지역은 아니지만, 때때로 조공하여 책봉을 받는 관계이라고 대답했다. 속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자주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외국이 무력으로 조선을 침략할 경우에 대해서는 중국은 약정에 의거해서 논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각국과의 조약문 중에 속국이라는 규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속국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속국을 침범한다는 것은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국제법상 중국이 말하는 「속국」이라는 개념은 없다. 일본과 조선이 전쟁하게 되면 일본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국은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sup>55)</sup>

웨이드는 중국과 일본의 회담결과를 듣고 중국이 조선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러시아가

54) 日本國際協會編, 『大日本外交文書』第8卷, pp.154-155.

55) 日本國際協會編, 『大日本外交文書』第9卷, pp.143-151.

일본에 원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일본이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했다. 파크스는 일본정부가 개항하려고 하는 조선의 3개항은 강화 또는 서해안에 있는 항, 부산, 영흥이다. 이들 항을 여러 외국에 개항하지 않으면 부산과 영흥은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러시아의 동맹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제국의 이익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파크스는 일본이 명목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표방하고 있지만, 때로는 전쟁으로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정부는 출병 때에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에 국외중립을 지키고 각국주재공사에게 알리어 일본의 의도를 양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군사행동을 취한다고 주장했다. 개전을 준비하고 일본정부가 군대에 명령체계를 철저히 하고, 재정상 경비를 절감하고, 보아소나드에게 전시 국제법상의 문제를 조사하도록 하여 일본주재각국공사에게 통지하여 또 각국주재일본공사에게 통지하여 전쟁의 수순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요구대로 조선이 응하면 조선을 개화로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복, 또는 병합을 의도대로 실행한다.

또 파크스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조선이 국교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876년1월6일 전권대사 黒田清隆는 조선에 대해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징벌을 행한다. 굴복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일본은 만족한다. 애초부터 토지를 탐하여 판도를 넓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음 사신을 파견함에 있어서 미리 명확히 말하여 설득시키는 것이 일본의 국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56)</sup>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해 신속한 조약체결을 요구했다. 조선은 관례를 존중해야한다고 대응했다. 또한 조선은 새로운 일본의 조약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조선정부의 의향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만국의 보편적인 예」(만국공법)라고 하여 강경하게 조약체결을 요구했다.<sup>57)</sup>

드디어 일조수호조규가 조인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 전권은 조약비준은 조약의 대안목으로 반드시 군주가 서명을 날인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조선국왕의 서명이 없으면 조약체결이 성사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선사절(신헌)은 조선에서 비준이라는 것은 신하에 대한 행위로서 신하가 군주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본대신은 죽어도 비준에 응할수 없다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국의 예의에 맞지 않다고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여 강화, 下關, 長崎

56) 『黒田清隆建議』, 『朝鮮出兵に關する策案』, 金正明編 『日韓外交史料』, pp.92-93.

57) 日本國際協會編, 『大日本外交文書』, 9권, pp.91-92.

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교섭을 결렬시키겠다고 위협했다.<sup>58)</sup> 결국 양국대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비준서에는 조선국왕의 날인을 대신해서 일본측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 만든 「朝鮮君主之寶」라는 것을 날인하여 조인과 동시에 비준된다고 명기했다.<sup>59)</sup> 이렇게 해서 일조수호조규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국제공법상 합법적인 불평등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교섭의 성공은 완전히 일본전권의 확고한 의지에 의한 것으로 일본이 원했던 모두가 해결되었다고 했고, 동양의 외교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서양의 외교법칙 즉 무력적인 강압으로 획득하려고 했던 것을 취했다는 것을 파크스에게 말했다. 이는 1853년 페리도항이후 구미열강이 일본에게 행한 외교였다. 일본이 그것을 조선에 적용한 것이다.<sup>60)</sup>

파크스는 일조수호조규는 1858년 일영통상조약과 현저하게 유사한 것이라고 했고, 일영통상조약은 다른 3개국 통상조약과 함께 일미통상조약을 모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조수호조규와 5개국 통상조약은 현저하게 유사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웨이드와 영국의 파크스는 일러 협력에 의한 조선침략을 우려했는데, 일조수호조규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된 것은 조선문제를 둘러싼 일영간의 불협화요소가 없어졌고, 영흥의 개항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일수호조규는 조선의 자주국과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호한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약은 구미열강이 일본에 부과한 조약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지만, 훨씬 가혹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조선의 독립은 정치적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실지로 조선의 독립을 존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sup>61)</sup>

## 5. 나오면서

이상으로 근대일본의 국제공법 수용과 그 적용상 오용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본론에서 논증된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공법은 유럽에서 16,7세기에 나타나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체계화되고 보편화되어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다. 유럽에서 일찍이 국제공법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유럽이라

58) 日本國際協會編, 『大日本外交文書』 제9권, pp.99-103.

59) 日本國際協會編, 『大日本外交文書』 제9권, p.73.

60) 石井孝,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p.361.

61) 石井孝,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p.403.



는 좁은 공간에 많은 민족들이 대거 이동하여 국경분쟁을 일으키면서 다민족국가형태로 발전하였고, 또한 일찍부터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중재재판이 널리 활용되었다. 그래서 근대유럽에서는 국경분쟁이 대부분 해결국면에 접어들어서 국제질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근대국제법으로서 영토취득과 분실의 이론이 생겨났고, 이것은 역으로 영토분쟁의 해결기준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중재재판이 널리 이용되었다. 그런데 일본을 둘러싼 아시아에서 단 한건의 분쟁도 중재재판으로 해결된 경우는 없었다. 그 이유는 유럽과 달리 오늘날 영토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내셔널리즘이 강화에 의해 발생한 영토분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일본은 미국의 요구로 1854년 미일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러시아, 영국, 네덜란드와도 수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의 국제공법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1858년 체결한 「일미수호통상조약」은 강대국의 처지를 대변했던 국제공법에 의해 치외법권과 통상권을 미국에 인정해야하는 약소국가의 비애를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일본은 「막말, 명치일본의 대외관계」에서 최대한 유럽 강대국과 동등한 조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했다.

셋째로, 일본은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면서 국가목표를 부국강병에 두었다. 그 실천방법으로 식민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영토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강대국의 실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제공법을 적용하여 유럽각국과의 경험을 살려서 탈아의 입장에서 아시아각국에 대해 힘의 논리로 국익을 확보해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구를 일본관도라고 선언하고, 대만원정을 실행했으며, 조일수호조규를 강요하였던 것이다.

근대일본이 영토 확장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던 시기에 유럽에서는 통상조약으로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일본은 유럽에 의해 힘으로 강요당한 통상조약 체결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서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는 영토협정 체결을 힘으로 강요하여 영토합병 및 정복이라는 것으로 국제공법을 악용했다. 오늘날 일본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영토분쟁의 본질은 국제공법을 악용한 것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李漢基, 『韓國의 領土』,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